##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유상범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27

발의연월일: 2024. 7. 11.

발 의 자:유상범·구자근·엄태영

송석준 • 주진우 • 조정훈

박충권 • 신동욱 • 조배숙

박형수 · 곽규택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출입국관리법」 등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성명, 성별, 외국인등록번호 등 정보를 수집·관리하고 있으나, 기관 간 통일된 인적정보 체계가 없어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기 및 관리하는 실정임.

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에는 성명이 영문으로 등록된 외국인이 다른 기관에는 성명이 한글로 등록되거나, 한글 성명조차 여러 기관 간일치하지 않는 등 동일인 확인에 불편이 초래되어, 수사·과세·복지등 행정업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이 외국인에 대한 표준화된 정보인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·보유·관리 및 제공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정보시스

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(안 제2조제17호, 제78조의2 및 제78조의3 신설).

##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7. "외국인 기본인적정보"란 법무부장관이 이 법 및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.
  - 가. 외국인의 여권에 기재된 해당 외국인의 성명, 성별, 생년월일, 국적, 사진 및 여권의 번호
  - 나. 외국인의 선원신분증명서에 기재된 해당 외국인의 성명, 성별, 생년월일, 국적, 사진 및 선원신분증명서의 번호
  - 다.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
  - 라.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1항 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

제78조의2 및 제7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8조의2(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) ① 법무부장관은 「전자정부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(이하 이 조에서 "행정기관등"이라 한다)의 장이 외국인에 대한수사, 공소의 제기·유지 및 과세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에 사용

할 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.

-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.
- ④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에 대한 수사, 공소의 제기·유지 및 과세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라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제공받아 해당 업무에 사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. 이 경우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.
- 제78조의3(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) ① 법무부장관은 제78조, 제78조의2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·보유·관리및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무부령으로 정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~ 16. (생 략)	1. ~ 16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17. "외국인 기본인적정보"란
	법무부장관이 이 법 및 「재
	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
	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보
	유 및 관리하고 있는 외국인
	에 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
	의 정보를 말한다.
	가. 외국인의 여권에 기재된
	해당 외국인의 성명, 성별,
	생년월일, 국적, 사진 및
	여권의 번호
	<u>나. 외국인의 선원신분증명서</u>
	에 기재된 해당 외국인의
	<u>성명, 성별, 생년월일, 국</u>
	<u>적, 사진 및 선원신분증명</u>
	<u>서의 번호</u>
	다.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
	<u>인등록번호</u>
	라.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
	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
	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

#### <신 설>

#### 소신고번호

- 제78조의2(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) ① 법무부장관은 「전자정부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행정기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(이하 이 조에서 "행정기관등"이라 한다)의 장이외국인에 대한 수사, 공소의 제기·유지 및 과세 등 관계 법령에 따른업무에 사용할외국인기본인적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경우이를 제공할수 있다.
 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따라제공받은외국인기본인적 정보를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따라처리하여야한다.
  - ③ 제1항에 따른 외국인 기본인 적정보의 제공 방법 및 절차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 부령으로 정한다.
  - ④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에 대한 수사, 공소의 제기·유지 및 과 세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라 외국인 기본인적 정보를 제공받아 해당 업무에

<신 설>

사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. 이 경우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를 존중하여야 한다.

제78조의3(정보시스템의 구축· 운영) ① 법무부장관은 제78조, 제78조의2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·보 유·관리 및 제공하는 데 필요 한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.